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백종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21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21.

발 의 자 : 백종헌 · 윤재옥 · 이성권
박준태 · 김기웅 · 임종득
김예지 · 서천호 · 최형두
권영진 · 김기현 · 성일종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감염병 전파차단을 위해 방역조치가 시행될 경우 대상자가 되는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격리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여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량발생 시 방역과 인권의 양립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감염병의심자의 정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격리, 감염 여부 검사 등의 조치 대상을 명확화하고 과도한 행정조치를 방지하도록 함(안 제2조제15호의2).
- 나. 감염병환자등 및 의심자 격리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(안 제43조의2).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5호의2가목 중 “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”을 “전파가능 기간 내에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”으로 한다.

제43조의2의 제목 “(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)”를 “(격리자에 대한 격리 및 해제 통지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②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41조, 제42조제2항·제3항 및 제7항,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격리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격리 대상자 및 조사거부자는 구제청구를 할 수 있으며,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「인신보호법」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격리 대상자 및 조사거부자”는 “피수용자”로, 격리 조치를 명한 “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은 “수용

자”로 본다(다만, 「인신보호법」 제6조제1항제3호는 적용을 제외한다)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15. (생 략) 15의2. “감염병의심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가. 감염병환자,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(이하 “감염병환자등”이라 한다)와 <u>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</u> (이하 “접촉자”라 한다) 나.·다. (생 략) 16. ~ 21. (생 략) 제43조의2(<u>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</u>) ①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15. (현행과 같음) 15의2. ----- -----. 가. ----- ----- ----- --- <u>전파가능 기간 내에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</u> ----- 나.·다. (현행과 같음) 16. ~ 21. (현행과 같음) 제43조의2(<u>격리자에 대한 격리 및 해제 통지</u>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41조, 제42조제2항·제3항 및 제7항,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격리</u>

<신 설>

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격리 대상자 및 조사거부자는 구제청구를 할 수 있으며,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「인신보호법」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격리 대상자 및 조사거부자”는 “피수용자”로, 격리 조치를 명한 “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은 “수용자”로 본다(다만, 「인신보호법」 제6조 제1항제3호는 적용을 제외한다).

④ 제1항 및 제2항-----

-----.